

정보보호 서약서 (외부기관용)

본인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의 의료정보와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의료원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의료법 제23조 (전자기록) 3항,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를 준수하겠습니다.
3.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료원의 소유이며, 모든 정보는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의료원의 사전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업무상 필요한 정보 이외의 것을 확인하지 않으며, 본인에게 접근이 허가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5.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 및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6.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보호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7. 의료원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 활동(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을 적극 이행하며, 보안점검 시스템 및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의료원에서 지정한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9.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10. 이용 이후에도 이용 중 취득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절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였을 경우 정보보호 관리규정과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보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기 관 :
 부 서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장 귀하